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357

2025년 3월 5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우형찬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1. 제안이유

○ 인구 구조 및 분포와 인구 변동이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 활동인 인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인구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57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 인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 및 태도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인구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정부에서는 2006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을 제정하여 인구정책의 법적 근간을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인구정책의 수단이 되는 인구교육(제7조의2)[1] 조항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

- 이에 따라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부터 인구교육 관련 학생용 교재 개발, 국가교육과정에 인구교육 관련 내용 반영, 인구교육 관련 교과연구회 및 교원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운영, 학교 인구교육 핵심교원 양성, 교과서(중·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표-1]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사업추진 내용

추진전략	중점과제
지역협업 기반의 인구위기 대응 역량교육	① 지역 친화적 인구교육 환경조성 - 교육청•지차체 연계 업무 협약 -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② 전국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 -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 대학 온라인강좌(k-mooc) 개발•운영 - 전사회적 인구교육 기획 확대 (군•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③ 인구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인구교육을 이끄는 전문인력 집중 양성	① 인구교육 전문인력 집중 양성 - 학교인구교육 핵심교원 양성 - 지자체 전문인력 양성
인구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지원	① 인구교육 콘텐츠 개발•지원 - 교과서(중•고)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 학교급별 표준영상교육 콘텐츠 개발

출처: 보건복지부.「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계획」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인구정책 관련 시책을 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체계적인 인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다루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각각 인구교육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전문가 협의 및 교직원연수,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항), 해당 시행계획에는 인구교육의 기본목표 및 방향,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2항).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구교육 사업은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 지정·운영, 학교 인구교육 핵심교원 양성, 교과서(중·고)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 학교급별 표준 영상교육 콘텐츠 개발 등 대부분의 학교와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각주로 근거 표시)

-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학교 대상 인구교육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기업(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청은 이러한 인구교육 관련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더욱이 최근 인구교육은 과거 인구교육[3]과 달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인구교육의 방향은 인구정책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4].

이에 학교 인구교육 내용도 변화되는 인구교육 방향에 맞추어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의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와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 인구교육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2) 보건복지부(2025.2.).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 계획.
3) 과거 인구교육의 내용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보육과 양육', '가정 내에서의 젠터 평등' 등의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4) 보건복지부 (2022). 미래지향 인구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3)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인구교육 사업계획에서 ‘지역 친화적 인구교육 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교육청·지자체와의 연계·협력 체계 마련’,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세종시에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인구교육 관련 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추가로 3개 지역과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5].**

○ **한편 안 제8조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는 공공기관(단체) 뿐 아니라 민간기관(단체)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이는 인구교육이 저출산 대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법 제7조의2[6]), 이러한 대책에 대해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법 제30조[7])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안 제8조는 교육청이 현재 국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5) 보건복지부(2025.2.). 2025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 계획.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 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
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되는 인구교육 협력체계(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구축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인구 관련 가치관과 태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

5.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구교육 운영 및 지원) ①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연수) ①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